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명확화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18호)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47호)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83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주요내용	4
2. 검토의견	7

I. 개 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518호)

가. 제안경위

2024년 10월 4일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 신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547호)

가. 제안경위

2024년 10월 4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583호)

가. 제안경위

2024년 10월 7일 강득구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각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에 ‘3년 이상 공단에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¹⁾(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함, 이하 같음)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²⁾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이수진의원안은 공단의 이사 수를 15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고, 강득구의원안은 공단의 비상임이사 후보는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³⁾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함.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 보되,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박해철·강득구의원안은 인원 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수진의원안은 1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제25조·제2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는 비상임이사 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 느 일방이 추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1.·2.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사회보험 또 는 근로복지사 업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 한 <u>사람으로서</u> <u>「공공기관의</u> <u>운영에 관한 법</u> <u>률」 제29조에</u> <u>따른 임원추천</u> <u>위원회가 추천</u> <u>하는 사람</u> <u><신 설></u>	4. 3년 이상 재 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4. 3년 이상 재 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 준법」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 른 근로자를 말	3. ----- ----- ----- ----- ----- ----- -사람
	4. 3년 이상 재 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 준법」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 른 근로자를 말	4. 3년 이상 재 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 준법」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 른 근로자를 말	

	<u>합이 있는 경우</u> <u>그 노동조합의</u> <u>대표자를 말한</u> <u>다)의 추천이나</u> <u>근로자 과반수</u> <u>의 동의를 받은</u> <u>사람 1인</u>	<u>한다. 이하 이</u> <u>조에서 같다) 중</u> <u>에서 근로자대</u> <u>표(근로자의 과</u> <u>반수로 조직된</u> <u>노동조합이 있</u> <u>는 경우 그 노</u> <u>동조합의 대표</u> <u>자를 말한다)의</u> <u>추천이나 근로</u> <u>자 과반수의 동</u> <u>의를 받은 사람</u>	<u>한다. 이하 이</u> <u>조에서 같다) 중</u> <u>에서 근로자대</u> <u>표(근로자의 과</u> <u>반수로 조직된</u> <u>노동조합이 있</u> <u>는 경우 그 노</u> <u>동조합의 대표</u> <u>자를 말한다)의</u> <u>추천이나 근로</u> <u>자 과반수의 동</u> <u>의를 받은 사람</u>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 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사회에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⁴⁾

4) 현재 노동이사(근로자이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이고,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양주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충주시임.

2022년 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를 1인 이상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⁵⁾⁶⁾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확대되었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야 하는 공기업은 32개, 준정부기관 55개로 총 87개이나 실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한 기관은 70개(공기업 31개,

- 5)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인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인 기관으로서 정부 출연·출자 등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으로 지정한 기관을 의미하고,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300명, 총 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인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 출연·출자 등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유형구분	요건
공기업	직원정원≥300인, 총수입액≥200억원, 자산≥30억원, 자체수입비율≥50%
준정부기관	직원정원≥300인, 총수입액≥200억원, 자산≥30억원, 자체수입비율<50%
기타공공기관	이외 공공기관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립대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준정부기관 39개)에 그치고 있어⁷⁾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원활한 정착이 필요하다고 볼 것임.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의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⁹⁾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의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를 ①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②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사례가 없음.¹⁰⁾

7)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4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pp. 118-119.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②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9) 제16조(임원)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임원으로 두는데, 2024년 12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는 기관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9인, 상임감사 1인이 재직 중임.

각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공단의 임원 임명 규정에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비상임이사에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단의 법적 지위(준정부기관)와 관계 없이 노동이사제를 구현함으로써¹¹⁾ 공단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공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한편, 이수진의원안은 이미 이사의 정원이 충족되어 근로자인 비상임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원의 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2024년 12월 현재 공단은 이사장을 제외하고 13인의 이사(상임이사 4, 비상임이사 9)를 두고 있고, 법률상 15인까지 이사를 둘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제 구현에 필요한 비상임이사의 정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공단 이사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공단의 업무량이나 이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강득구의원안은 공단의 비상임이사 후보를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¹²⁾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데 현

11) 현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로 소속 근로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임.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제25조·제2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행법에 따라서도 준정부기관인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있어¹³⁾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임원 정수 증원에 관하여는 임원의 정수를 증원하지 않아도 추가 임명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수진의원안 중 임원의 요건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¹⁴⁾

13) 제16조(임원)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 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실시에 관하여 3년 이상 재직 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 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강득구의원안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명시한 사항에 관하여
는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자 중 임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